

2022년도 온라인 교육일정 (3 ~ 4월)

보수교육

- 교육형태 : 온라인교육(실시간)
- 교육시간 : 09:00 ~ 13:00 (4시간)
- 교육예약 :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

교육장	교육일	교육시간	비고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7일(월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8일(화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12일(토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14일(월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21일(월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26일(토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4월 4일(월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4월 9일(토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4월 14일(목)	09:00 ~ 13:00	드라이브인
온라인(화상회의)	4월 17일(일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4월 18일(월)	09:00 ~ 13:00	
온라인(화상회의)	4월 29일(금)	09:00 ~ 13:00	드라이브인

위험물교육

- 교육형태 : 온라인교육(실시간)
- 교육시간 : 09:00 ~ 18:00 (휴식시간1시간 포함)
- 교육예약 :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

교육장	교육일	교육시간	비고
온라인(화상회의)	4월 11일	09:00 ~ 18:00	휴식시간 1시간포함

홈페이지 예약일정 개시

- 3월 : 2월 18일(금) 14:00 / 4월 : 3월 18일(금) 14:00

※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조정 및 집합교육 일정 수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기타사항

-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변경 실시될 수 있음
- 동영상(VOD)방식 하반기 이후 실시 예정

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[별표 1]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10호서목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처 분 기 준
10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○사업 일부정지(10일)

[별표 2]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(제7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3호머목, 제2호의 제17호차목, 제2호 비고 제1호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의금액
3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머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30만원

※ 비고

-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.
(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×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)

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금액
아.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,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5호	50만원
보.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	50만원